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5. 4. 28.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18호로 2025년 4월 14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 관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CCTV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4조)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적용을 명시(안 제4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4. 15.~2025. 4.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제4항은 무단투기자 제도 및 단속 용도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폐기물관리법」 제8조1)에서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2)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자에게 법 제68조제4항³⁾에 근거

1)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제11호에 따르면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 한편, 영등포구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 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라 한다)가 있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는 도시안전과 소관임에 따라,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관리 부서인 청소과 소관 조례에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2025년 2월 조사 기준, “무단투기 단속 등”을 위해 전용 CCTV 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5개(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로 파악됨.

- **안 제40조(준용규정)**은 안 제4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41조(시행규칙)제1항**은 구체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

□ 검토결과

-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덧붙여,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운영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에 따라 ▲안전성 확보 ▲출입자 통제 ▲영상정보 보호원칙 ▲교육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영등포구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운영개요

☐ 운영개요

- 운영개시일: 2025. 2. 1. ~
- 운영인원: 시간선택제 마급(관제요원) 1명
- 운영내용
 -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이 근무시간 중 실시간 모니터링
 - 무단투기 취약지역 55개소를 24시간 녹화
- 사업비용: 463,000천원(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 관제형 CCTV 사양

녹화보관 기간	실시간 영상	실시간 방송	화소	야간투시기능	영상 회전·확대
30일	○	○	1,200만 화소	○	○

☐ 운영방법

- 무단투기자 발견시 계도방송을 통해 쓰레기를 회수하도록 안내
- 무단투기 단속원과 연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영상녹화기록을 통한 단속 실시
- 클린하우스 등 수거거점 이용자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영등포구 무단투기 CCTV 설치 대상지 55개소

연번	동명	주 소
1	영등포본동	영신로9나길 16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앞)
2	영등포본동	영신로13길 3
3	영등포본동	신길로62길 17 (영원중 뒤 담벼락)
4	영등포동	영등포로 239 (영등포시장 입구 대로변)
5	영등포동	국회대로54길 41-6
6	영등포동	(클린하우스)영등포로33길 8 (동방주차장)
7	당산1동	당산로32길 13 (동해해물탕 옆 주차장)
8	당산1동	당산로14길 10-1 (한빛교회 뒤)
9	당산1동	양산로17길 9 (보경창고 앞)
10	당산1동	(재활용정거장)영등포로27길 16
11	당산2동	당산로40길 10 (현대5차 담벼락 공중전화)
12	당산2동	버드나루로19길 8 (상가 및 오피스텔 밀집)
13	도림동	도림로113길 3 (어린이놀이터 앞)
14	도림동	영신로9다길 5-1 (고추말공원 입구)

연번	동명	주 소
15	도림동	영신로1길 18-1 (주택가 담벼락)
16	문래동	선유로9다길 21-6 (미림에이클래스 앞)
17	문래동	당산로 10 (문래동 삼각지)
18	양평1동	선유서로25길 19 (오목교투웨니퍼스트 앞)
19	양평1동	선유로 113 (건물 뒤편 골목)
20	양평1동	선유동1로 11-2 (양남시장 부근)
21	양평2동	양평로20길 20 (당산초 담벼락)
22	양평2동	선유로53길 21 (선유도한강오피스텔 앞)
23	양평2동	선유로53길 34-1 (오피스텔 및 빌라 밀집)
24	신길1동	영등포로 382 (대로변)
25	신길1동	영등포로80길 8 (KD빌라 앞)
26	신길1동	영등포로80길 32 (화단 앞)
27	신길1동	도신로64길 1 (이공커피 옆 담벼락)
4	신길3동	도신로 164 (언덕길 위)
5	신길3동	신길로45길 5-2 (주택 밀집)
6	신길3동	도신로24길 14 (우성5차 담벼락)
31	신길4동	신길로38길 29 (쉼터 앞 화단)
32	신길4동	신길로42가길 14 (주택 밀집)
33	신길4동	가마산로 503-1 (반석교회 뒤편)
34	신길5동	대방천로 154 (대로변)
35	신길5동	대방천로 144 (대로변)
36	신길5동	도림로69길 12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
37	신길5동	도림로81길 11 (미림빌라 앞, 빌라 밀집)
38	신길5동	(클린하우스)신길로15길 9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39	신길6동	여의대방로23길 7 (대동합판 옆 담벼락)
40	신길6동	신풍로 44 (신풍역 1번출구)
41	신길6동	신풍로25가길 2 (주택 밀집)
42	신길7동	여의대방로47라길 18 (계단 옆 담벼락)
43	대림1동	대림로22길 2 (횡단보도 앞 공영주차장 담벼락)
44	대림1동	대림로 142 (건물뒤편 자성빌라 앞)
45	대림1동	시흥대로181길 15 (주택 밀집)
46	대림2동	디지털로48길 21 (미래파크타운 앞 화단)
47	대림2동	디지털로37나길 21 (공영주차장 15-1 건물 앞)
48	대림2동	디지털로40길 14 (에버하우스 앞, 주택 밀집)

연번	동명	주 소
49	대림2동	디지털로48나길 11 (주택 밀집 사거리)
50	대림2동	(클린하우스)대림로21길 14 (대동초등학교)
51	대림3동	대림로29다길 9 (장원빌라 뒤)
52	대림3동	도림로41길 11-6 (상가 밀집)
53	대림3동	대림로31길 32 (빌라 밀집)
54	대림3동	도림로37길 5 (삼거리 앞)
55	대림3동	(클린하우스)가마산로47길 14 (신우어린이공원)

참고 자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

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3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제 전담요원은 방법,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④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관부서·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한(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종료 및 방문 출입자의 퇴실 시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등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20조(교육의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사람